

보도 일시	2022.2.24.(목) 석간 2022.2.24.(목) 06:00	배포 일시	2022. 2. 23.(수) 14:00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원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고선미 (044-200-5625)

수산생물질병도 이제는 간이진단키트로 진단 - 2. 24~4. 5.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목)부터 4월 5일(화)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산생물질병을 진단하고, 신고체계 등을 개선해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간이진단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 간이진단키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의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진단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을 신고하고,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 현지의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을 우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새로운 국제규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 위생·검역 규범(SPS)과 관련된 질병관리 기준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였고,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신고를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진단 기관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위험이 있는 수산생물 질병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강한 수산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2년 4월 5일(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신속한 진단을 위한 간이키트 사용 근거 마련(안 제2조, 제9조 및 제15조)
 - 간이진단키트의 정의를 신설하고,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에 따라 수산물 질병을 신고하거나, 격리·이동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 간이진단키트란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수산생물의 생리학적·병리학적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약·기구 등의 제품
- 검역에 관한 중장기 정책 수립 근거 명확화(안 제3조)
 -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병관리 대책과 함께 해외유입 수산물 질병 관리 중장기 대책 수립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
- 수산물방역관의 임명 또는 위촉 근거 개선(안 제7조)
 - 수산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 개선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도 국내 수산물품질병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현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 방역수행기관
→ (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방역수행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 수산물방역사 임명근거 마련(안 제8조)
 - 행정관청의 장이 수산물방역사를 위촉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죽거나 병든 수산물 신고 절차 개선(제9조)
 - 죽거나 병든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수산물방역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함
-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선(안 제10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경우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하고 있던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및 보고절차 개선**(안 제20조)

-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확정진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함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관리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 외국과의 협정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른 **질병 관리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시설에 대해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제**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록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해서 질병관리기준의 준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해 등록을 **취소·정지**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25조)

- 지정검역물 수입 시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금지** 대상으로 하고,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안 제26조의2)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 해외에서 지정검역물 양식·보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국에 소재하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수입검역 신청 전에 등록하도록 함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점검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국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수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참고 2

수산생물 검역 현장 사진

